
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

1. 제정 이유

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(법률 제19286호, 2023. 3. 28. 공포, 2024. 3. 29. 시행)됨에 따라 농촌생활서비스시설, 농촌위해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농촌생활서비스시설(안 제2조)

- 1) 생활서비스 주요 분야를 구분하고 관련 법에 따른 시설을 명시,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

나. 농촌위해시설(안 제3조)

- 1) 악취·소음·오폐수·진동 등으로 농촌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이전·철거·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

다. 주민협정의 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 및 주민협회의 승인(안 제6조, 7조)

- 1) 주민협정서, 대상 토지 면적(국유지·공유지 면적 제외)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(주민협정체결시) 등 주민협정의 인가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명시
- 2) 주민협의회를 설립하여 승인받으려는 협정체결자는 주민협의회

승인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

라. 위탁 수수료의 지급 및 요율(안 제8조)

- 1) 사업시행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의 요율을 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추진일정

- 1) 제·개정안 확정 : '23. 9월
- 2) 관계부처협의 : '23. 10월
- 3) 입법예고 : '24. 1월
- 4)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: '24. 2월
- 5) 공포 : '24. 3월

나. 재정수반 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

- 제정안(별첨)

< 별첨 >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
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농촌생활서비스시설)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3호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별표 1과 같다.

제3조(농촌위해시설) 법 제2조제14호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악취·소음·오폐수·진동 등으로 농촌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중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·철거·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1. 「악취방지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,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 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
2. 「경관법」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
3.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주민이 농촌 경관 및 환경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시설

제4조(통합지침)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지침”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1조에 따른 국비보조사업(이하 이 조에서 “국비보조사업”이라 한다)의 범위 및 내용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지침을 말한다.

②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통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국비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
2. 국비보조사업의 지원규모 및 요건
3. 국비보조사업의 통합적인 지원 절차 및 방법
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비보조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농촌협약의 신청 시 첨부서류) 법 제17조제1항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
1. 농촌협약 체결 신청서
2. 신청 전제조건 등 필요한 증빙자료
3. 그 밖에 법 제21조에 따른 통합지침으로 정하는 서류

제6조(주민협정의 인가신청 시 첨부서류)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5조제1항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
1. 주민협정서
2. 대상 토지 면적(국유지·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)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(주민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3.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서(주민협정의 경미하지 않은 사항의 변경·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4. 주민협정서 변경 대비표(주민협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5. 그 밖에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제7조(주민협의회 승인)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설립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협정체결자는 별지 서식의 주민협의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주민협의회가 정하는 운영규정
2. 협정체결자의 주민협의회 구성 동의서
3. 주민협의회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
4.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명부
5. 그 밖에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제8조(위탁 수수료의 지급 및 요율)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요율의 위탁 수수료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농촌생활서비스시설(제2조 관련)

1. 보육시설: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국·공립 어린이집 및 법인·가정·법인단체·민간 어린이집(시설이용 자격을 요하는 직장어린이집 및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제외한다),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따른 공동육아나눔터
2. 복지시설: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복지시설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,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,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에 따른 청소년문화활동시설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관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따른 다문화지원센터
3. 보건의료시설: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
4. 교육시설: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기관,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
5. 문화시설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, 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따른 문화시설,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, 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 따른 생활문화시설, 「도서관법」에 따른 도서관
6. 체육시설: 「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체육시설
7. 상업 및 생활편의 시설: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상업기반시설,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기관
8. 행정안전시설: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,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소, 「정보통신기반보호법」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, 「소방기본법」에 따른 소방기관, 「경찰법」에 따른 경찰청 및 경찰서
9. 교통시설: 「교통안전법」에 따른 교통시설, 「대중교통법」에 따른 대중교통시설,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장
10. 휴양시설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녹지,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자연공원,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 등 산림휴양서비스 관련 시설, 「장사법」에 따른 장사시설, 조례에 따른 관광휴게시설 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
11. 그 밖의 시설: 1부터 10까지에서 규정한 시설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시설 및 조례로 정하는 농촌생활 서비스에 필요한 시설

위탁수수료의 요율(제8조 관련)

1. 공공시설 건설 등의 업무

공사비	요율 (공사비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)	비고
100억원 이하	90/1,000 이내	1. "공사비"란 재료비·노무비·일반관리비·이윤 및 부가 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. 2. 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에 따른 금액을 기 준으로 하되, 설계·시공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 3.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 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. 4.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총 공사비에 대한 수수 료를 산정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 수 수료를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. 5.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더한다. 6. 조사·설계 등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비에 합산하여 요율을 적용한다.
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	80/1,000 이내	
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	75/1,000 이내	
500억원 초과	70/1,000 이내	

2.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등의 업무

위탁금액	요율 (위탁금액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)	비고
10억원 이하	20/1,000 이내	1. "위탁금액"이란 기초조사비, 토지매입비,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, 권리 또는 지장물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 (이주대책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. 2.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수수료는 위탁수수 료의 요율을 정할 때에 더한다. 3. 기초조사,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 후 준공 및 관리처분 을 위한 측량·지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 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분의 3 0의 범위에서 이를 더할 수 있다. 4.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가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.
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17/1,000 이내	
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	13/1,000 이내	
50억원 초과	10/1,000 이내	

주민협의회 승인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(대표자 또는 사무실)	전화번호

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협의회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귀하

첨부서류	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른 첨부서류 1. 주민협의회가 정하는 운영규정 2. 협정체결자의 주민협의회 구성 동의서 3. 주민협의회 대표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4.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명부 5. 그 밖에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